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4 . 2 . 2 7 . (화)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504
제출일자 : 2024. 2. 16.
회부일자 : 2024. 2. 19.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대일 의원 등 13인

2. 제안 이유

- 맑은 물은 경북도민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노후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옥내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이외에 수도관 성능 향상장치를 추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정비의 내용에 상수도 성능 향상 장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
- 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규정(안 제7조)

4. 참고 사항

- 가.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첨부
- 나. 규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 : 규제사무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유인 없음
-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마. 관련법령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5. 검토 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2012년 12월 기준 도내 전체 주택 1,103,666세대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659,004세대로 59.7%로 나타나 노후 옥내 수도시설의 정비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노후 주택 현황>

(2021. 12월말 기준,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 건물내 주택
노후주택 합계 (①+②)	659,004 (59.7%)	338,704 (74.3%)	265,530 (48.2%)	19,680 (64.1%)	23,510 (49.9%)	12,120 (64.6%)
20년이상 30년 미만(①)	320,419	89,599	202,599	6,635	15,798	5,788
30년 이상(②)	338,585	249,105	62,931	13,045	7,712	6,332
전체 주택수	1,103,666	455,892	551,145	30,721	47,146	18,762

- 수도관의 붉은 녹물 발생에 대한 3가지 대책으로 배관 교체, 배관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사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배관 교체와 배관 갱생은 정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배관 교체와 배관 갱생에 비하여 적은 비용과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 기간 중 수도의 사용이 가능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정비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의 공급이 건강한 삶의 기본 조건임을 고려했을 때 수도 설비의 지원 순위가 같은 경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을 지원 우선 순위에 두도록 한 것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정비의 정의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추가

-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란 이온화 경향, 분자 진동, 초음파,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하여 수도관의 부식 및 스케일¹⁾의 생성을 방지하는 수처리 장치를 의미합니다.
-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건물, 학교, 관공서, 주택, 아파트 등의 기존 옥내 급수설비(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에 설치하여 스케일 및 부식이 형성된 배관의 부식 진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신설배관에 설치할 경우 더 이상 스케일 및 부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²⁾

1) 물에 함유된 칼슘, 규산염, 석회질 등의 광물질이 결합·퇴적되어 돌같이 단단해지는 현상

- 본 조례의 정비 대상이 옥내 급수설비인 만큼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정비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사업’ 추진 중 현장여건에 따라 노후관 교체가 어려운 현장의 시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 제품 사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 2024년 1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15,292가구, 수급권자는 151,367명이고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중복제외)는 45,274가구, 수급권자는 64,069명이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권자 소유 주택은 13,009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권자 소유 주택 현황>

(2024년 1월 기준)

구 분	소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주택수	13,009	2249	730	718	1,109	593	832	748	655	505	578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678	298	270	512	272	186	252	306	494	378	614	32

2) 2024. 2월 현재, 나라장터에 7개사 112개 품목이 ‘부식억제장비’로 등록되어 있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낮은 도민의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건강한 삶과 국민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7조제4항제1호·제2호의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인 '녹물 출수'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를 정비에 포함할 경우,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에 대한 시공성 향상과 정비 가구 확대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정비사업의 우선 지원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과 도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시군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계	115,292	151,367	45,274	64,069
포항시	23,274	31,452	7,462	11,507
경주시	10,758	13,919	3,040	4,645
김천시	6,512	8,545	2,760	3,781
안동시	8,808	11,276	2,780	3,921
구미시	10,507	14,784	4,294	7,030
영주시	6,019	7,786	2,126	3,024
영천시	6,154	7,922	2,283	3,166
상주시	4,544	5,683	2,226	2,857
문경시	2,887	3,486	1,465	1,806
경산시	10,665	14,586	3,914	5,992
의성군	2,995	3,536	1,273	1,550
청송군	1,331	1,607	684	823
영양군	935	1,230	457	563
영덕군	2,469	3,001	1,682	1,994
청도군	2,005	2,446	1,098	1,299
고령군	1,817	2,344	908	1,141
성주군	1,989	2,501	778	984
칠곡군	4,723	6,638	1,798	2,822
예천군	2,448	3,174	1,151	1,495
봉화군	1,453	1,784	971	1,198
울진군	2,722	3,328	1,824	2,113
울릉군	277	339	300	358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정비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대상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공사비의 100% 중 낮은 금액

2.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100% 중 낮은 금액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정비사업 지원 예산(금회 일부개정조례안 변동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제7조(정비사업 지원)에 따른 세대급수관과 공용급수관 정비사업 지원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제5조(정비사업 대상)와 제6조(정비사업 제외 대상)를 적용한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22. 8월 시행) 반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 공용급수관	100	100	100	100	100	500
	○ 세대급수관	20	20	20	20	20	100
	소계(b)	120	120	120	120	120	600
□ 총 비용(a-b)		△120	△120	△120	△120	△120	△600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도비	일반회계	120	120	120	120	120	600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80	280	280	280	280	1,400
민간							
기타							
합계		400	400	400	400	400	2,000

5. 부대의견

- 지방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옥내수도시설* 노후로 인해 적수(붉은물=녹물), 이물질 등 수질저하 민원이 잦음
- *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미정비 실정
- 옥내수도시설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에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주는 일부 조례개정 등 선제적인 대응 요구

6. 작성자

-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지방시설주사 강명수(054-880-3578)



경 상 북 도



수신 맑은물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

1. 맑은물정책과-1818(2024.2.6.)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 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교체 외 수도관 성능 향상장치 추가와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검토 결과,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전제하여 365세대(공용 급수관 330세대, 세대급수관 35세대) 기준으로 총 사업비 20억원(도비 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담당부서의 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정비대상 특성 상 매년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고, 사업추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신청자의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선정 기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추진 시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산담당관관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팀장	김미숙	예산담당관	윤희남	전결 2024. 2. 8.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069	[2024. 2. 8.]	접수	맑은물정책과-2002	(2024. 2. 9.)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4	팩스번호	054-880-2369	/ lackof2pro@korea.kr		/ 비공개(5)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관련법령 발췌

□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도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2.>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 11. 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